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공탁법」 제5조의2에 의한 형사공탁의 신청을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자공탁의 경우 발급되는 형사공탁서 양식을 규정하여 사무처리에 있어 업무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양식에 형사공탁서 양식을 신설함(안 별표 제1호, 안 별지 제1-6호 양식)

3.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6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3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전자공탁 양식목록

양식 번호	명 칭	관계 조문	비 고
1-1	금전 공탁서(변제 등)	공탁규칙 제20조	위·변조 방지조치 ○
1-2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공탁규칙 제20조	"
1-3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	공탁규칙 제20조	"
1-4	금전 공탁서(영업보증)	공탁규칙 제20조	"
1-5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	공탁규칙 제20조	"
1-6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공탁규칙 제20조, 제82조	"
2-1	금전 공탁통지서	공탁규칙 제23조제1항	"
2-2	금전 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	공탁규칙 제23조제1항	"
2-3	공탁사실통지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제4항	"
3	공탁서 정정신청서	공탁규칙 제30조제2항	"
4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공탁규칙 제32조제1항	"
5	지급위탁서	공탁규칙 제43조제1항	
6	증명서	공탁규칙 제43조제1항	
7	공탁금 이자 청구서	공탁규칙 제53조제2항	위·변조 방지조치 ○
8-1	공탁기록 열람 신청서	공탁규칙 제59조	
8-2	사실증명신청서	공탁규칙 제59조	
8-3	사실증명서	공탁규칙 제59조	위·변조 방지조치 ○
9	이의신청서	공탁법 제12조제2항	
10	보정권고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0조	위·변조 방지조치 ○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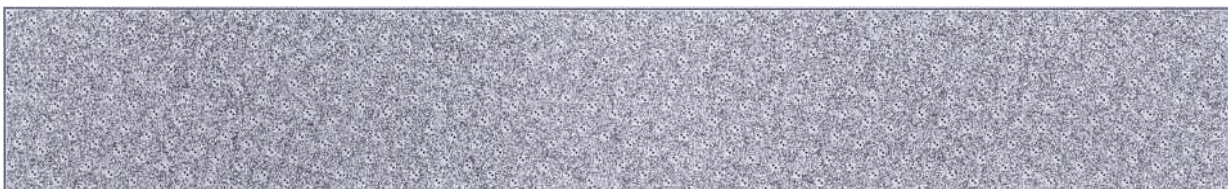
1. 공탁신청 및 수리

공탁번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법 제5조의2
공탁자	성명 (상호, 명칭)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주소 (본점, 주사무소)			검찰청의 명칭과 사건번호	
	전화번호				
공탁금액		한글 숫자	보관은행		
공탁원인사실					
비고(첨부서류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좌납입신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성명		
회수 제한 신고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공탁자 성명	대리인 성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전자공탁홈페이지(ekt.scourt.go.kr)의 [열람발급/발급확인]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이용안내/프로그램설치]에서 전자발급문서 검증프로그램 다운로드하고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문서의 위.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

발행일



2. 공탁금 납입증명

법원명 :
공탁번호 :
납입일자 :
납입금액 :
보관은행 :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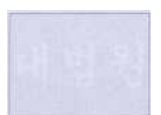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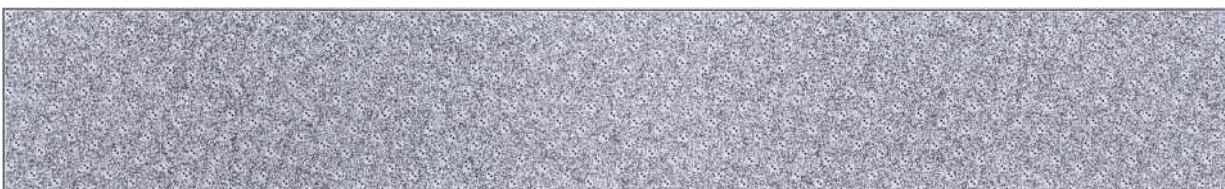
※ 유의사항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금 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한) 공탁서 원본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4.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피공탁자란의 성명은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 가명 포함)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일 사건에 피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 가명 포함)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성명란: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홍길동” 이 기재된 경우 “홍길동”을, “홍○동”이 기재된 경우 “홍○동”을, “홍길동(가명)” 이 기재된 경우에 “홍길동(가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공탁원인사실란: ① 피해발생시점, 피해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탁홈페이지(ekt.scourt.go.kr)의 [열람발급/발급확인]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이용안내/프로그램설치]에서 전자발급문서 검증프로그램 다운로드하고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문서의 위.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

발행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제1호] 전자공탁 양식목록				[별표 제1호] 전자공탁 양식목록			
양식 번호	명 칭	관계 조문	비 고	양식 번호	명 칭	관계 조문	비 고
1-1	금전 공탁서(변제 등)	공탁규칙 제20조	위변조 방지조치 ○	1-1	금전 공탁서(변제 등)	공탁규칙 제20조	위변조 방지조치 ○
1-2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공탁규칙 제20조	〃	1-2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공탁규칙 제20조	〃
1-3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	공탁규칙 제20조	〃	1-3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	공탁규칙 제20조	〃
1-4	금전 공탁서(영업보증)	공탁규칙 제20조	〃	1-4	금전 공탁서(영업보증)	공탁규칙 제20조	〃
1-5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	공탁규칙 제20조	〃	1-5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	공탁규칙 제20조	〃
〈신 설〉				1-6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공탁규칙 제20조, 제82조	〃
2-1	금전 공탁통지서	공탁규칙 제23조제1항	〃	2-1	금전 공탁통지서	공탁규칙 제23조제1항	〃
2-2	금전 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	공탁규칙 제23조제1항	〃	2-2	금전 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	공탁규칙 제23조제1항	〃
2-3	공탁사실통지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제4항	〃	2-3	공탁사실통지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제4항	〃
3	공탁서 정정신청서	공탁규칙 제30조제2항	〃	3	공탁서 정정신청서	공탁규칙 제30조제2항	〃
4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공탁규칙 제32조제1항	〃	4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공탁규칙 제32조제1항	〃
5	지급위탁서	공탁규칙 제43조제1항		5	지급위탁서	공탁규칙 제43조제1항	
6	증명서	공탁규칙 제43조제1항		6	증명서	공탁규칙 제43조제1항	
7	공탁금 이자 청구서	공탁규칙 제53조제2항	위변조 방지조치 ○	7	공탁금 이자 청구서	공탁규칙 제53조제2항	위변조 방지조치 ○
8-1	공탁기록 열람 신청서	공탁규칙 제59조		8-1	공탁기록 열람 신청서	공탁규칙 제59조	
8-2	사실증명신청서	공탁규칙 제59조		8-2	사실증명신청서	공탁규칙 제59조	
8-3	사실증명서	공탁규칙 제59조	위변조 방지조치 ○	8-3	사실증명서	공탁규칙 제59조	위변조 방지조치 ○
9	이의신청서	공탁법 제12조제2항		9	이의신청서	공탁법 제12조제2항	
10	보정권고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0조	위변조 방지조치 ○	10	보정권고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0조	위변조 방지조치 ○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7624